

#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안내문

## ■ 유의사항

-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3.01.10(화)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 가능합니다.
- 분양홍보관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사전방문 예약제로 운영되며, 사전 방문예약된 일시에 당첨자 본인 1인에 한하여 입장 가능합니다. (대리인 접수 가능)

## ■ 사전방문예약 안내

구분	신청일자	예약방법
서류접수 방문예약	2023.01.25(수)~2023.02.02(목) 10:00 ~ 17:00	제일풍경채 하남감일 홈페이지 (www.gi-jeil.co.kr)
계약체결 방문예약	2023.02.06(월)~2023.02.13(월) 10:00 ~ 17:00	

## ■ 당첨자 서류제출, 계약 일정 및 장소

구분	일정 및 시간	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
당첨자 서류접수	2023.01.27(금)~2023.02.03(금), 8일간, 10:00 ~ 17:00	당사 분양홍보관 (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618-3,센트럴오금 A동 602호)
당첨자 계약체결	2023.02.10(금)~2023.02.14(화), 5일간, 10:00 ~ 17:00	

※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기간 내 서류 미제출시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## ■ 당첨자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	
공통서류 (일반/특별공급)	○		1.인감증명서,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
	○		2.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, 대리인 신청 불가
	○		3.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4.주민등록표 등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5.주민등록표 초본	본인	•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○		6.가족관계증명서	본인	•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, "상세"로 발급
		○	7.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•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, "전체포함"하여 발급
		○	8.추가 개별통지 서류	본인	• 사업 주체에서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(개별통지)
		○	9.확약서	본인	• 당사 홍보관 비치
특별 공급 유형별	공통서류	○	1.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세대원	• 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 제출
		○	2.소득확인 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본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(만 19세 이상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발급)
		○	3.비사업자확인각서	본인 및 세대원	• 당사 홍보관 비치(만 19세 이상 세대원 포함)
		○	4.무소득 사실증명원	본인 및 세대원	• '소득신고 사실없음'으로 발급(만 19세 이상 세대원 포함)
		○	5.임신증명서류	본인 또는 배우자	• 소득관련 가구원 수에 임신한 태아를 포함할 경우 •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(임신진단서)제출 : -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(담당 의사명, 의료기관등록번호, 질병코드번호, 출산예정일, 의사 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,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) • 출산이행각서(홍보관 비치)
청년	○	1.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, "상세"로 발급	
	○	2.부모의 소득 관련 서류	직계존속	• 본인이 소득이 없을 경우	
신혼부부	혼인 상태인 경우	○	1.혼인관계증명서	본인	• 혼인신고일 확인서, "상세"로 발급
		○	1.예비신혼부부 서약서	본인	• 당사 홍보관 비치,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 증명 필요
		○	2.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	예비 배우자	• 혼인 예정 배우자 기준 "전체포함"하여 발급
신혼부부	혼인 예정인 경우	○	3.소득확인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		○	3.소득확인서류	본인 및 세대원	• 혼인 후 구성될 만 19세 이상 세대 구성원 모두 소득 관련 서류 발급
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(배우자 포함)	○	1.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청약자 기준	
	○	2.위임장	-	• 주택홍보관 비치, 청약자 인감도장 날인	
	○	3.대리인 신분증, 인장	대리인	•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,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	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하며,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## ■ 특별공급(신혼부부/청년) 소득증빙서류

해당자격	소득입증 제출서류	발급처	
근로자	일반근로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
	신규취업자	①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	①,② 해당직장
	전년도 전직자	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②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	①,② 해당직장
	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불가시 (건강보험증상'직장가입자' 해당)	① 총 급여액/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근로소득지급조서) ② 재직증명서 (직인 날인)	①,②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/간이과세자 /면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①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부분)	① 국민연금관리공단
	신규사업자 (개인,법인)	①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(부분) ② 사업자등록증	① 국민연금관리공단 / 세무서
	법인사업자	① 전년도 종합사업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	① 세무서 ② 등기소
보험모집인 / 방문판매원	①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	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	
국민기초생활 수급자	①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① 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	① 계약 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 지급 조서 (직인날인)	① 해당직장 ※ 국민연금관리공단	
일용직 근로자	※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, 국민연금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국민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		
무직자	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(분양사무소 비치) ※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	-	

※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의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
- 군 복무 중이어서 건강(의료)보험증이 없는 경우 :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 복무자(직업군인 제외)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, 군 복무자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종교기관(교회, 사찰 등)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된 경우 :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부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
-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: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,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(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)이 있는 경우 : 전년도 1월 1일부터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.
-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: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,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.

## ■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

구분	구비서류
본인 계약시	- 인감증명서 1통 (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) ※ 사전구비서류 접수시 생략가능 - 인감도장 -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 - 임대계약금 입금증(지정계좌 납부, 무통장입금표)
제3자 대리인 계약시 (배우자 포함)	- 임차인의 인감증명서 2통 (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용(본인 발급용) / 아파트 임대계약 위임용(본인발급용)) ※ 사전구비서류 접수시 인감증명서 1통 (용도 : 아파트 임대계약 위임용(본인발급용)) - 임차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(홍보관 비치) - 임차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) - 대리인 신분증 - 임대계약금 입금증(지정계좌 납부, 무통장입금표)

※ 상기 서류는 최초 임차인 모집공고일 2023.01.10(화)이후 발행분에 한하여, 구비서류 제출완료된 당첨자에 한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하며, 신청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